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송도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375호

다. 제출일자 : 2019. 1. 31

라. 회부일자 : 2019. 2. 7

2. 제안사유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후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대중교통 요금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총비용 ≈ 4,468,700천원(연평균 893,7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조례안 제14조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746,700	813,900	887,100	967,000	1,054,000	4,468,700
	소계(b)	746,700	813,900	887,100	967,000	1,054,000	4,468,700	
	□ 총 비용(b-a)	746,700	813,900	887,100	967,000	1,054,000	4,468,700	

다. 협의사항

○ 기 간 : 2018. 2. 12 ~ 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수정동의

- 입법예정 조례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게 예산규모내에서 타 지자체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수용 가능함.
- 단, 유사한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 필요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는 조례제정 목적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는 2015년 기준 전체 운전자의 15%로 2011년 대비 58% 증가하고¹⁾,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10,155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10년간 약 2.6배 증가²⁾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미루어 볼 때,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줄이고 안전한 서울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고령운전자의 정의’, 서울시장의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는 동 조례 제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1)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자료(2016),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2)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2018)

■ 운전면허 자진 납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운전면허를 자진 납부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비례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³⁾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정지시력이 30대 자신들의 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야간시력의 경우 75세 운전자는 25세 운전자보다 32배의 빛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교통공단은 연구보고서⁴⁾에 “노화로 인한 기능 손상과 인지능력 저하가 더 큰 위험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고령운전자 중 74.5%가 ‘노화 인한 기능저하’를 운전중단 사유로 응답했다고 설명함
-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취지에는 고령운전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이 없어 그간 추진실적이 그간 미진했던 실정임
- 그에 반해 부산시는 지난해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주반납제도’를

3) 정연식 외 2명,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4) 이원영 외 2명,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도로교통공단, 2015

벤치마킹하여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각종 상업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과 추첨을 통해 10만원이 충전된 후불교통카드를 지급한 결과,

전체 반납자의 절반에 가까운 5,280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이는 2017년 466건에 비해 11배가 늘어난 실적이며 이와 비례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8.6% 감소⁵⁾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 조례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원범위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예산 및 대상,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시행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판단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

5) 부산시 보도자료, 어르신! 안전을 위해 운전 출입하시고 교통비 지원받으세요, 2019. 2. 18

단 및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음⁶⁾)

-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보다 실효성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수동식 교육이 아닌 체험위주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관련(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관련된

6)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개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개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
| <u>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u> | <u>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u> |
| <u>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u> | <u>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u>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개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개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개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개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개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개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실제 운전자의 안전운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동 조례 시행시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범위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